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56호 2024. 3. 20.(수)

거창축제거창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855호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거창군 조례 제2856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1
거창군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18
거창군 조례 제2858호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 22
거창군 조례 제2859호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거창군 조례 제2860호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 ····· 40
거창군 조례 제2861호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44
거창군 조례 제2862호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52
거창군 조례 제2863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비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7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91호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 61
거창군 규칙 제1392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65
거창군 규칙 제13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7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44호 도로명주소 고시 ····· 81
거창군 고시 제2024-45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8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444호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5차 공고 ····· 85
거창군 공고 제2024-453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 98
거창군 공고 제2024-461호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101
거창군 공고 제2024-471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13
거창군 공고 제2024-47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27
거창군 공고 제2024-47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2
거창군 공고 제2024-475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 150
거창군 공고 제2024-476호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 ···· 151
거창군 공고 제2024-477호 분묘개장공고(2차) ····· 153
거창군 공고 제2024-495호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 154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55호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2. (생 략) ②~④ (생 략)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삭 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② (생 략)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삭 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경률(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경감률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개월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입 감소

나. 관련 조문: 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나. 2024년 감면 추계: 15,329천원 정도

작성자 재무과장 이동복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4-19

제출연월일	2024. 2. 16.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나. 인용법령 개정, 약칭표현에 따른 용어 정비함(안 제4조·제6조)

다. 감면기한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사항 삭제함(안 제9조의2·별표)

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안 제10조)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300원 ⇒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600원 ⇒ 1,00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2. 2.~2.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56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

성한다.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

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
   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제9조(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이용료	
	기본	추가
1. 대회의실	2시간에 20,000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본 이용료에 20퍼센트 추가 가. 1시간 초과 때마다 다.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2. 소회의실	2시간에 5,000원	
3. 체력단련실	1개월에 15,000원	
4. 실내 테니스장	1시간에 10,000원	1시간 초과 때마다 기본 이용료에 20퍼센트 추가

[별표 2]

이용료 감경기준(제7조제2항 관련)

감경대상	감경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100분의 10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가족	100분의 50. 다만, 각 호에 중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관련조문

1)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안 제2조)

2) 운영의 위탁(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 연도 (2022년)	2차 연도 (2023년)	3차 연도 (2024년)	4차 연도 (2025년)	5차 연도 (2026년)	합계
계	1,689	1,727	2,144	45	45	5,650
국비	930	1,320	1,640	-	-	3,890
도비	-	359	-	-	-	359
군비	759	48	504	45	45	1,401

3. 관련 의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 및 시설 비용: 5,560백만원
2. 운영비용 보조: 매년 45백만원 정도 소요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24-21

제출연월일	2024. 2. 16.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기능 및 시설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기능: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근로자와 군민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

2) 시설: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

나. 휴관일, 이용신청, 이용의 제한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이용료 및 감면, 반환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위탁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8조·제16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2,144백만원 확보(국비 1,640백만원, 군비 504백만원)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2호 중 “문화재보존”을 “문화유산보존”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각각 한다.

제5조(「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제8조제2호, 제14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재난관리 주관기관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국가유산청	가. 문화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제8조(「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계획조례」의 개정)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4-20

제출연월일	2024. 2. 16.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재’ 용어 및 인용법명을 변경함(안 제1조~제9조)

1) 문화재 ⇒ 문화유산

2)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3.~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58호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 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거창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현장점검)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4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건축조례」 제3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용도		연면적	㎡
	구조		사용 승인일	
	소유자		신청인과의 관계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금액 천원(보조금) (자부담)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철거 시 해체계획서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그 밖의 증명서류(필요시)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이내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군비	20	20	20	20	20	100

1) 1년 평균 지원기준: 1호, 호당 최대 20백만원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7

발의일자	2024. 2. 20.
발 의 자	신중양,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안 제4조~제6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안 제7조)
라. 안전진단 대상(안 제8조)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바.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대상(안 제10조~제11조)
사. 현장점검 및 대행 수수료(안 제12조~제13조)
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14조)
자.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2. 8.~2.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59호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같은 조 제1항 중 “빈집 정비를”을 “빈집정비와 활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정비 대상”을 “빈집정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지원 대상”을 “빈집정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다만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

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신 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정비 대상) ①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 대상) ① 빈집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다만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빈집정비 지원

나. 관련 조문: 빈집정비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군비	104,100	104,100	104,100	104,100	104,100

※도비 확보 시 반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2024년 예산 기준

사업명	예산액(천원)	사업물량
귀농, 귀향민 주택(빈집) 리모델링 사업	37,500	7동
빈집정비사업(철거)	66,600 ※도비: 19,980	73동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8

발의일자	2024. 2. 20.
발 의 자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거창군에 유입하는 인구에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조례에 맞게 제명을 ‘빈집정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조)

다.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라. 빈집정비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64조2·제6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 행복농촌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2. 15.~2.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60호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우유 급식(이하 “학교우유급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태 조사 등) ①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거창교육지원청, 관내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낙농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학교우유급식의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1차 연도 (24년)	2차 연도 (25년)	3차 연도 (26년)	4차 연도 (27년)	5차 연도 (28년)	합계
학교우유급식 지원	569,882	569,882	569,882	569,882	569,882	2,849,41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4,301명 × 530원 × 250일 = 569,882천원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김 규 태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9

발의일자	2024. 2. 20.
발 의 자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효율적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학교급식법」 제3조·제8조·제9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2. 13.~2024. 2.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61호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벼일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찰벼일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자체 수매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액 지원)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차액 지원 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게을리하여 농산물 생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차액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
2. 기준가격 결정
3.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 가격안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농업관련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중 7명 이내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기준가격 결정 및 차액 지원 계획 시 그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기준가격 보장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기준가격 대비 도매시장가격이 일정부분 이상 하락 시 차액의 일부 혹은 전부 지원

나. 관련 조문: 차액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농작물 가격변동 추이를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원 빈도는 10년에 1~2차례 정도 예상

1) 최근 10년간 기준가격 보장제 발동 횟수

(가) 사과 2, 벼·찰벼 1, 딸기 1

2) 최근 10년간 지원된 예산

(가) 벼 1,370백만원, 찰벼 87백만원

(나) 사과 1,762백만원

(다) 딸기 792백만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벼	찰벼	사과	딸기	기간
군비	연 1,370	연 87	연 1,762	연 792	2024년~ 2028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 공통기준

1) 작물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일정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품목 구분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00만원 한도

나. 벼·찰벼: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5퍼센트 이하 하락 시

1) 전체농가: 벼 5,740농가 찰벼 164농가

2) 최근 10년간 발동 빈도

(가) 벼 2016년 1차례

(나) 찰벼 2022년 1차례

3) 벼 kg당 75원 보전 시 1,370백만원

4) 찰벼 kg당 75원 보전 시 87백만원

다. 사과·딸기·포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0퍼센트 이하 하락 시

1) 전체농가: 사과 577농가, 딸기 264농가

2) 최근 10년간 발동 빈도

(가) 사과 2017년, 2019년 2차례

(나) 딸기 2017년 1차례

3) 사과 1,762백만원

(가) 쓰가루 136백만원

(나) 홍로 780백만원

(다) 부사 846백만원 등

4) 딸기: 설향 792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4-22

제출연월일	2024. 2. 16.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지원하여 군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1) 차액: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

나. 차액 지원, 지원 및 제외 대상, 신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1) 차액 지원 대상: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정함(안 제7조~제15조)

1) 기능: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 기준가격 결정,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사업 발생시 추경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4.~2.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62호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거창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합성
4.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8조에 따른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
2. 입법평가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군 자치법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된다.
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창군의회 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3조(입법평가 반영)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6

발의일자	2024. 2. 20.
발 의 자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의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입법평가 대상, 기준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라.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9조)

마.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용역,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2.~1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863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나. 관련조문: 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상기준: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2) 추계기간: 2024. 1. 1.~법 개정 시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2024년)	2차 연도(2025년)	3차 연도(2026년)	4차 연도(2027년)	5차 연도(2028년)	합계
의정활동비(군비)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264,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비용산정 기준

가. 의정활동비

1) 의정자료수집비·연구비: 월 1,200,000원 이내

2)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이내

나.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최대 금액 월 1,500,000원

2. 증감비교(400,000원 증액/월 1인 기준)

가. 현행: 1,100,000원 지급

나. 개정안: 1,500,000원 지급

3. 연간 소요예산

월 1인당 증액	개월	인원	합계
400,000원	12	11	52,800,000원

작성자 의회사무과장 진 학 성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21

제출일자	2024. 3. 6.
제 출 자	**이홍희 의장 외 10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변경(안 제6조제1항)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 월 3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다. 협의: 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라. 기타 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24. 3. 6.~3. 10.

3) 비용추계서: 붙임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규칙 제1391호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귀국보고서”를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내용·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기간·인원·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삭 제>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허가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4-20

제출일자	2024. 3. 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여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검토 및 관리를 위한 보완 규정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함(안 제6조)

나. 출장자의 출장지역 관할 재외공관 신고를 삭제함(안 제9조)

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점검 및 보완요구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2. 14.~3.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규칙 제1392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세탁실 이용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3조(이용신청) 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이용신청과 동시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용 승인 신청서** <앞면>

이용 시설	· 기본 시설: · 그 밖의 시설:
이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이용 목적	
특별한 설비 등이 필요한 사항	
비고(해당 시)	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
성별: 남 / 여
전화번호:
주소:

거창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

<앞면>

변경 사유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이용 일시		
	이용 시설		
	부속 설비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거창군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
성별: 남 / 여
전화번호:
주 소:

거창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이용 승인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주 소			
이용 시설				
이용 목적				
이용 승인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이용료		원		

이용 시설명	이용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주소			
신청 내용	이용 시설			
	이용 신청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의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이용료 감면 신청서

<앞면>

신청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성별	남 / 여	
이용 시설명			
이용일시 (기간)			
이용 목적			
감면 사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앞면>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
(단체명)</td><td></td><td>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td><td></td></tr>
<tr><td>성별</td><td>남 / 여</td><td rowspan="2">전화번호
(휴대전화)</td><td rowspan="2"></td></tr>
<tr><td>주소</td><td></td></tr>
<tr><td colspan="2">이용 승인 시설</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이용 승인 기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납부한 이용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입금계좌</td><td>- 은행명:
- 계좌번호:</td><td>예금주명</td><td></td></tr>
<tr><td colspan="2">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첨부</td><td colspan="4">- 은행통장 사본 1부</td></tr>
</table>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4-14

제출일자	2024. 2. 15.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이용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세탁실 이용료를 정함(안 제2조)

나. 이용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감면 및 반환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2,144백만원 확보(국비 1,640백만원, 군비 504백만원)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3월 20일

거창군 규칙 제13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학예연구 직렬란 중 학예일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 직렬 /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제3조(「거창군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4.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란 중 제16호·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16.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7. 매장유산 등 비지정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의안 번호	2024-11

제출연월일	2024. 2. 15.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규칙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재’ 용어 및 인용법명을 변경함(안 제1조~제5조)

1) 문화재 ⇒ 문화유산

2)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3.~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24 - 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0.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807 등 4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4 - 45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거 창 군 수

1. **고시일자** : 2024. 3. 20.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4년 3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거창읍	변경 전	가조가야로	거창읍 양평리 1239-122 (가조가야로 52)	-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변경(생성)	직권
		변경 후	가조가야로	거창읍 양평리 1239-122 (가조가야로 52-1)	거창읍 양평리 1152-2 (가조가야로 52-3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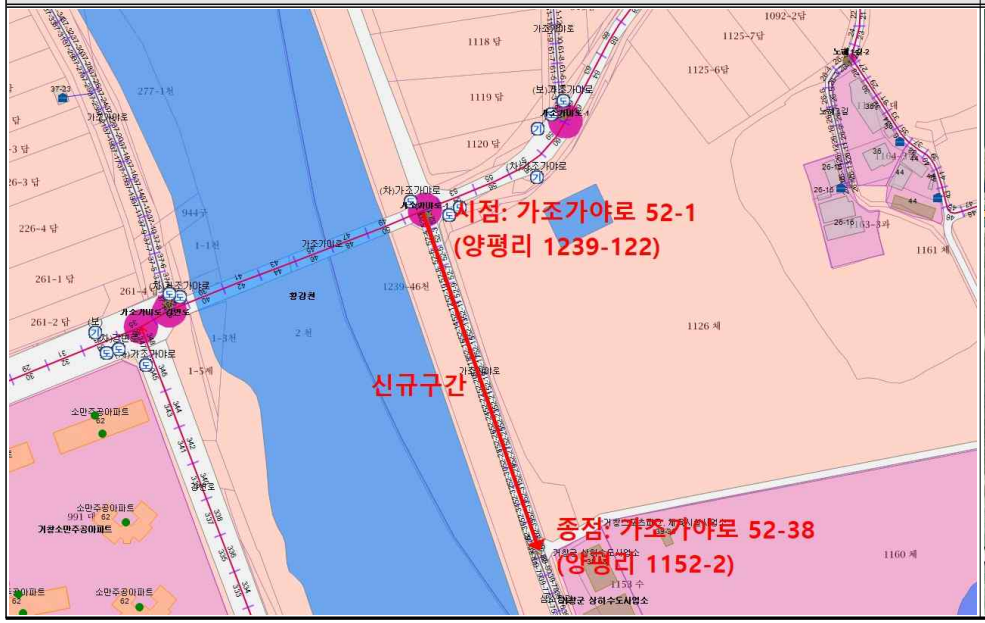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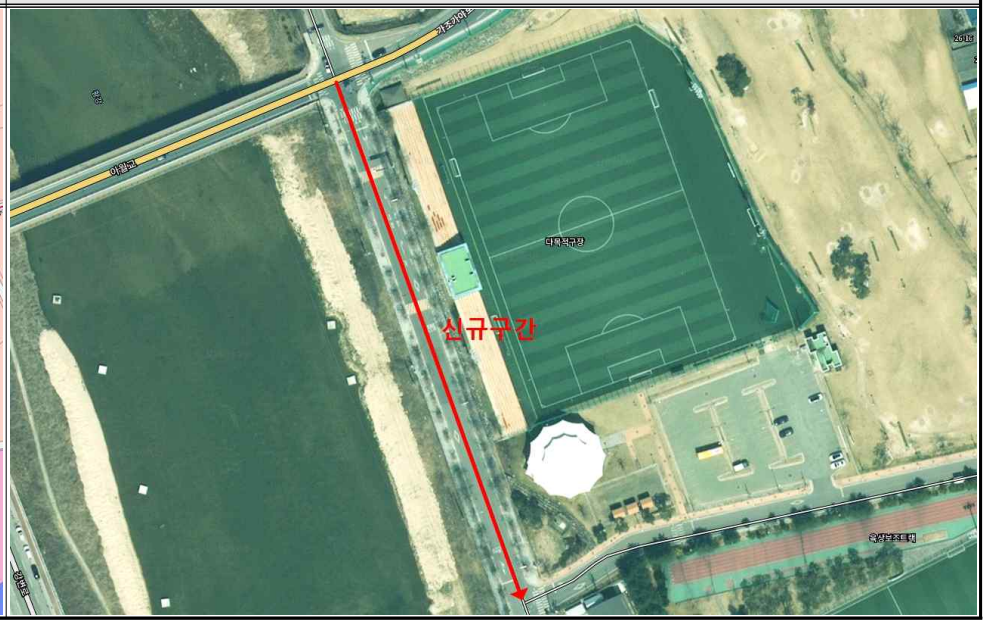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주상면	변경 전	빼재로	주상면 완대리 1248 (빼재로 1112)	-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변경(생성)	직권
		변경 후	빼재로	주상면 완대리 1248 (빼재로 1112-1)	주상면 완대리 838 (빼재로 1112-70)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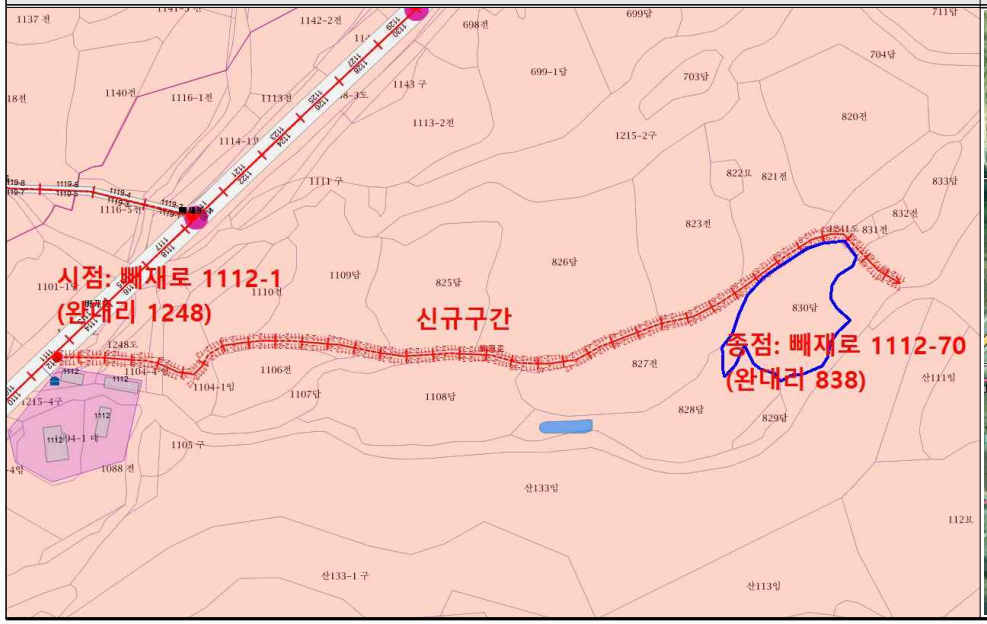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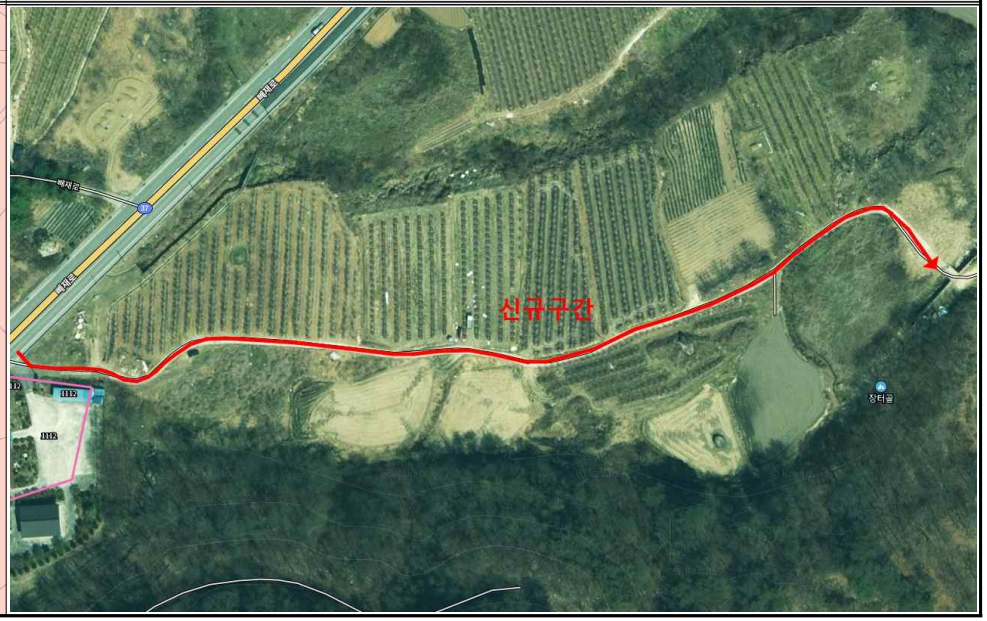

거창군 공고 제2024 - 444호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5차 공고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인구교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명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 관내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업무 · 기타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업무

2. 응시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u>모두 충족</u>하여야 함

채용분야	자격요건
청소년 동반자	· 채용 확정 시 거창군 내 거주가 가능한 자 *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건임
	· 관련 자격증 * 1개 이상 소지한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 1년 이상인 자

1) 관련자격증 및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1개 이상 소지자**	▸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나.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

❶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❹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❺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❻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❼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❽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라.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기타 채용조건

1)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일제 직업 소지자는 신청 불가

2)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불인정

바. 가점 대상자

1) 법정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2)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사. 근거법령 및 기준

1)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3)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등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보　　수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청소년동반자 보수)에 의함

※ 연 33,300천원 내외(기본급, 사례진행비, 자격수당, 연차수당 등)

다. 근로기간 : 2024. 4. 1. ~ 2024. 12. 31.(9개월)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전일제)

※ 운영 상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마.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바. 근무내용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업무 등

1)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매뉴얼’을 사전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 > 전자도서관 > 정보검색 > 본원간행물(PDF) 검색메뉴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개정3판)”의 내용 확인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등 응시 적격 여부

2) 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①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면접위원 3명 예정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1) 모집공고 : 2024. 3. 14.(목) ~ 3. 22.(금) / 9일간

2) 원서접수 : **2024. 3. 14.(목) ~ 3. 22.(금)** / 9일간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담당(평일 근무시간 내)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발표 : 2024. 3. 25.(월) / 개별통보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4. 3. 28.(목)

-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부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 29.(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 근무개시(예정)일 : **2024. 4. 1.(월)**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서식1) 1부
나. 자기소개서(서식2)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1부
라. 주민등록등・초본 1부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자격검증 동의서(서식4) 1부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5) 1부
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바. 채용서류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팩스(☎055-940-8709)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합격자 제외),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비용은 구직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사. 채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번호		응시분야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HP :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요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특기 사항	

귀 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응시표	성명	한글		※ 응시번호	
		한자		응시분야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
	생년월일				
	2023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②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 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④ **자격·면허** : 운전면허는 기재하지 않음

⑤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⑥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이 력 서

사 진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 (만 세)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택) H·P)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학	~		
	~		
력	~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경	~			
	~			
	~			
	~			
	~			
력	~			
	~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자	. . .		
격	. . .		
사	. . .		
항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식2]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023.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경력, **특히 거창군 청소년동반자로서의 포부**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람.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주요경력 등

ㅇ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23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직무분야 : 청소년동반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채용 응시자로서, 거창군에서 채용하는 시험에 따른 경력, 자격, 면허 등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거창군수 귀하

[서식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청소년상담사) 로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거창군 아동보호전담요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거창군 공고 제2024-453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3. 14.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공공청사)사업
   - 명 칭 :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2. 사 업 자 : 거창군수
3.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상림리 일원
4. 사업면적 : 46,256㎡(사유지 397㎡)
5. 공고기간 : 2024. 3. 14. ~ 2024. 3. 28.(14일이상/초일불산입)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055-940-3592】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8.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임	99	99	이원종무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거소불명)	해당없음		
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임	298	298					

□ 물건조서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ㅇㅇ시)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해	당	없	음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 업 명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4-461호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거창군수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4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❶ 국유림 및 공유림

❷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❹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❺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❻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o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 o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 o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❽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❾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❿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①**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①**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②**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table>
<tr><th>임 산 물 생 산 업</th><th>육 림 업</th></tr>
<tr><td colspan="2">❶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 · 군 · 구의 <u>농촌*</u>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 · 면
- 시(특 · 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 · 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❷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td></tr>
<tr><td>❶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❷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❸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❹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❺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 임차 · 사용차하거나, 분할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td><td>❶ <u>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u>(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u>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u>
❷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td></tr>
</table>

나-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	기 준
❶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❷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❸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❹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❺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❻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❼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임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❶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❷~❼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4.1.1~'23.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❶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설계도·서・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❷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❶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❷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단, 계약기간 만료일이 '24.9.29. 이전인 경우에는 '24.9.30.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 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해당자 필수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농기계 임대계약서・일용직 고용・농자재 구매・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❶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❷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 ➢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❶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❷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❶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❷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생산업** **※ 해당자 필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❶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❷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❸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❹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❶ 파종 또는 식재하고, ❷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 (육림업) 임 내 3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❶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❷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❸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o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거창군 공고 제2024 - 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목적을 명확화(안 제1조)

나. 「관광진흥법」 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적용 범위 단순·명확화(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4조)

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 신설(안 제4조의2)

마.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안 별표)

사.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18조, 제19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다. 전화: 055-940-3762, 팩스: 055-940-3759, 이메일: kmk38@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마.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앞에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 2. 법 제3조제16호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3.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써 영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삭 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삭 제>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삭 제>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삭 제>
제6장 과태료 부과	<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 제>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table>
<tr><td colspan="14">전 경 사 진</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4"></td><td>화장실 명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지역구분</td><td colspan="2"></td><td rowspan="3">설치
년도</td><td rowspan="3"></td><td rowspan="3">관리책임
공무원</td><td>소 속</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설치 및
관리주체</td><td>설치주체</td><td colspan="2"></td><td>직 급</td><td colspan="6"></td></tr>
<tr><td>관리주체</td><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관 리 인</td><td colspan="6">(전화번호 :)</td><td colspan="2">월평균 이용인원</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규 모</td><td>부지
(㎡)</td><td>화장실
면적
(㎡)</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 수</td><td colspan="2">대변기유형</td><td colspan="2">사용료</td></tr>
<tr><td></td><td></td><td>남</td><td>여</td><td>장애인</td><td>성인용</td><td>유아용</td><td>동양식</td><td>서양식</td><td>유료</td><td>무료</td></tr>
<tr><td rowspan="2">편의시설
내역</td><td>세면
시설</td><td>난방
시설</td><td>냉방
시설</td><td>환풍기</td><td>화장지
(자 동
판매기)</td><td>비누</td><td>수건
(에어
타올)</td><td>탈취제
(방향제)</td><td colspan="2">청소도구함</td><td rowspan="2">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내부</td><td>외부</td></tr>
<tr><td rowspan="2">시설관리
내역</td><td>연월일</td><td>관리
사항</td><td>금 액
(천원)</td><td>연월일</td><td>관리
사항</td><td>금 액
(천원)</td><td>연월일</td><td>관리
사항</td><td colspan="2">금 액
(천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table>
<tr><td colspan="12">전 경 사 진</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4"></td><td>화장실 명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지 역 구 분</td><td colspan="2"></td><td rowspan="3">설 치
년 도</td><td rowspan="3"></td><td rowspan="3">관리책임
공 무 원</td><td>소 속</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설 치 및
관리주체</td><td>설치주체</td><td colspan="2"></td><td>직 급</td><td colspan="4"></td></tr>
<tr><td>관리주체</td><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관 리 인</td><td colspan="5">(전화번호 :)</td><td colspan="2">월평균 이용인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규 모</td><td rowspan="2">부지
(㎡)</td><td rowspan="2">화장실
면적
(㎡)</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 수</td><td colspan="2">대변기유형</td><td colspan="2">사용료</td></tr>
<tr><td>남</td><td>여</td><td>장애인</td><td>성인용</td><td>유아용</td><td>동양식</td><td>서양식</td><td>유료</td><td>무료</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편의시설
내역</td><td>세면
시설</td><td>난방
시설</td><td>냉방
시설</td><td>환풍기</td><td>화장지
(자 동
판매기)</td><td>비누</td><td>수건
(에어
타올)</td><td>탈취제
(방향제)</td><td colspan="2">청소도구함</td><td rowspan="2">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내부</td><td>외부</td></tr>
<tr><td rowspan="2">시설관리
내역</td><td>연월일</td><td>관리
사항</td><td>금 액
(천원)</td><td>연월일</td><td>관리
사항</td><td>금 액
(천원)</td><td>연월일</td><td>관리
사항</td><td colspan="2">금 액
(천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td><td>지정
여부</td><td colspan="2">비상벨
(설치수)</td><td colspan="2">CCTV
(설치수)</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현 행〉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3호	20	40	60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 비고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개정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 관계법령 발췌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 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4-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 농업기술분야 신규사업 정착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시설운영 및 업무체계 구축,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필요

3. **주요내용**

　가. 담당명칭 변경

　　1) 문화재 ⇒ 문화유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4.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란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23.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정책, **문화유산**, 박물관, 수승대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군 공고 제2024-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6조의2)

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나. 응시원서 상의‘탈모‘용어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1)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5의3)

1)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등)‘로 수정

라.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5의3)

1) 민간 경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응시요건 명확화

2)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마.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1)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바. 특수직급(전산직렬) 응시자격증 정비(안 별표 4)

1)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하고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2) 해양수산직렬, 항공직렬, 시설직렬, 조리직렬 등 특수직급에 대해 응시요건 필수자격증 종류 추가

사. 경력경쟁채용 '전산직렬'에 응시자격증 추가(안 별표 5의2)

1)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직렬에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및 '기사(빅데이터분석)' 자격증 추가

아.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안 별표 7의4)

1) 특수직급 응시자격증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함에 따라 가산 대상 자격증에서 '전산직렬'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의2 제1호 중 전산 직렬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이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7의4 가목 중 사회복지 직렬 다음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 데이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별표 4, 별표 5의3,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의	수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졸업자등**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 (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같은 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관 계 법 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조(적용 범위)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4 - 47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4년 3월 18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목 적: 농지(전) 조성

2. 사업지구명: 중상면 연교지구

3. 위 치: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151-3(임)

4. 사업시행면적: 3,967㎡

토 지 의 표 시					개간사업 시행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주상	연교	산151-3	임	30,942㎡	3,967㎡	

5. 사 업 개 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 업 비: 50,000천원(부지조성 등 50,000천원)

7. 사 업 기 간: 사업시행(허가)일부터 12개월

8. 사업시행자: 이창원(거창군 주상면 하임실길 66-5)

9. 이의신청기간: 2024. 3. 18. ~ 2024. 4. 17.

10.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거창군 공고 제2024-476호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공 시 송 달(보상협의) 공 고(2차)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9.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사업의명칭** :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4월 5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3. 19. ~ 2024. 4. 5.
   ○ 장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붙임] 공시송달 토지 내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계	2필지	-	-	397	397		1인	-	-	-
1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29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이원○무			
2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99	9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이원○무			

거창군 공고 제2024 - 477호

분 묘 개 장 공 고 (2 차)

「현대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8조, 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2차)** 해당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수량

소 재 지	수 량	비 고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08-5, 산15-4, 409-2, 409-3, 409-1, 산15-3, 산15-5, 410-11, 410-12, 411-4번지 내	3기	-

2. 개장사유 : 현대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부지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및 이장 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4. 안치장소 : 거창공설 공원묘지(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70번지)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고 및 연락처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3)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4-495호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거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거창읍 장팔리 웅곡저수지 ~ 김천리 김천1교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교통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간(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용역임.

바. 용역범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사. 용역예정금액 : 금2,344,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아. 입찰예정시기 : 2024년 4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 6. 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 게시로 갈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거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제 출 일 : **2024년 4월 3일(수요일) 09:00 ~ 18:00까지 (1일간)**

②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③ 제출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교통과 (☎055-940-3642)

다.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④ 자기평가서 : 1부(별권제출)

⑤ 업무 수행계획서 8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7부)

⑥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수행계획서 스캔 PDF파일, 업무중복도 작성파일, USB본체 라벨 부착(용역명, 회사명)】

※ 면접평가는 서면(업무수행계획서)평가로 대체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4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2-188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 등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을 적용합니다.

※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내용을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에 게재합니다.

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